

영등포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운동규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

-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안 제1조)
- 위원회의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의,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안 제3조)

- 심의대상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건당 3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으로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대상은 구청의 국소장과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등으로 정함(안 제5조)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8조)
-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주관부서 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조)
-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안 제10조)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2007년~2008년 용역계약 실적

(단위: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비고
계	486	19,534,639	
2007년도	219	9,632,418	
2008년도	267	9,902,221	

타 자치단체 사례

- 서울시 자치구(6개구)
 - 조례제정 시행 : 4개구(종로구,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
 - 훈령으로 시행 : 2개구(구로·송파구)
- 광역자치단체 조례 시행
 - 대전, 울산, 제주도, 서울시
- 기초자치단체 조례 시행
 - 고양시, 청주시, 부천시, 정읍시, 삼척시, 포항시, 화성시, 진주시, 영주시, 계룡시, 대구 북구, 광주시 등

소요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 70,000원 × 6명 × 4회(추정) = 1,680천원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성 있게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고, 용역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영등포구는
2007년 용역계약은 총 219건에 96억 3,241만 8천원이고,
2008년 용역계약은 총 267건에 99억 222만 1천원입니다.
- 타 자치단체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는 종로구,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이고,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는 구로구, 송파구 등 2개구,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학술용역만), 대전, 울산,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는 고양시외 11곳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위원의 참여는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3. 2.

보고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